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829
----------	-------

발의연월일 : 2026. 10. 7.

발 의 자 : 윤재옥 · 김기웅 · 김선교
백종헌 · 서천호 · 최은석
권영세 · 한기호 · 김 건
김상훈 · 이인선 · 엄태영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살생물제품을 국내에 판매하거나 유통시키기 위하여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에게 제품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판매·유통을 전제로 한 제조·수입은 명확히 승인대상이나, 판매·유통 없이 제조·수입자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품승인 필요성이 불분명한 상황임. 또한 자가사용 제품까지 승인대상이 확대되는 경우에도 현행 표시규정은 판매·유통 목적의 제조·수입자만을 표시의무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승인대상과 표시의무 대상 간 적용범위를 일치시킬 필요가 있음.

한편 제품승인 등에 관한 경과조치 중인 미승인 살생물 물질·제품에서 새로운 위해정보가 확인된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는 근거가 충분하지 않고, 승인심사·조사·검사 등 정부의 업무수

행 과정에서 새로운 위해정보를 확인한 경우에도 기업의 별도 보고 없이 필요한 사후조치를 권고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실정임.

이에 살생물제품을 국내에서 판매·유통시키거나 또는 사용하기 위하여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가 제품승인을 받도록 하여 자가사용 목적의 제조·수입을 승인대상에 명확히 포함하고, 직접 사용을 목적으로 제조·수입한 승인제품에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하려는 것임.

아울러 새로운 위해정보에 대한 보고의무 대상을 살생물제로 확대하고, 정부가 승인심사·조사·검사 등 업무수행 과정에서 새로운 위해정보를 확인한 경우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며, 해당 권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회수명령 등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하여 살생물제품의 승인부터 표시 및 사후 위해관리까지 안전관리체계를 일관되게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0조, 제27조, 제36조, 제36조의3 및 제37조).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중 “국내에 판매하거나 유통시키기 위하여”를 “국내에서 판매·유통 또는 사용하기 위하여”로 한다.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내에 판매하거나 유통시키기 위하여”를 “국내에서 판매·유통 또는 사용하기 위하여”로 한다.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물질승인·제품승인을 받은(제16조 제4항 전단에 따라 물질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및 제25조제4항 전단에 따라 제품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자 또는 살생물처리제품을”을 “살생물제를”로 한다.

제3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의3(정부가 확인한 새로운 위해성 등에 대한 조치 권고) 기 후에
너지환경부장관은 승인심사, 조사·검사 등 업무수행 과정에서 제3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확인한 경우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로 인한 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를 제조하거

나 수입하는자에게 수거·파기·수리·교환·환급·개선조치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제37조제1항제2호 중 “제36조제2항”을 “제36조제2항 또는 제36조의3”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0조(살생물제품의 승인) ① 살생물제품을 <u>국내에 판매하거나 유통시키기 위하여</u>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살생물제품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0조(살생물제품의 승인) ① -- ----- <u>국내에서 판매·유통 또는 사용하기 위하여</u> ---
② ~ ⑥ (생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27조(살생물제품의 표시 등) 제 품승인을 받은(제25조제4항 전 단에 따라 제품승인을 받은 것 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살생물제품을 <u>국내에 판매하거 나 유통시키기 위하여</u> 제조 또 는 수입하는 자는 기후에너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살생물제품의 겉면에 구매자가 알아보기 쉽게 표시하여야 한 다.	제27조(살생물제품의 표시 등) -- ----- ----- ----- ----- <u>국내에서 판매·유통 또는 사용하기 위하여</u> ----- ----- ----- ----- ----- ----- -----.
1. ~ 6. (생략)	1. ~ 6. (현행과 같음)
제36조(새로운 위해성 등에 대한 보고 및 조치 권고) ① 안전확 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제36조(새로운 위해성 등에 대한 보고 및 조치 권고) ① ----- -----

수입하는 자, 물질승인·제품승인을 받은(제16조제4항 전단에 따라 물질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및 제25조제4항 전단에 따라 제품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자 또는 살생물처리제품을 국내에 판매·유통시키기위하여 제조·수입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새로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2. (생 략)

② (생 략)

<신 설>

-----살생물제를-----

-----.

1.·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36조의3(정부가 확인한 새로운 위해성 등에 대한 조치 권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승인 심사, 조사·검사 등 업무수행 과정에서 제3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확인한 경우 안전확인대상생활 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로 인한 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위

	<u>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u> <u>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u> <u>바에 따라 해당 안전확인대상</u> <u>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를</u> <u>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에게</u> <u>수거·파기·수리·교환·환급</u> <u>·개선조치 또는 그 밖에 필요</u> <u>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u>
제37조(회수명령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품을 제조·수입·판매 또는 유통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의 회수, 폐기 등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37조(회수명령 등) ① ----- ----- ----- ----- -----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36조제2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권고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2. 제36조제2항 또는 제36조의3 ----- -----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